

영등포구의회
제17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신홍식 의원 대표발의】



2013. 4. 2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86호로 2013년 2월 21일 신홍식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경제적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영등포구 관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홍보를 할 수 있음.(안 제4조)

- 다.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거나 직접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및 홍보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안 제6조)
- 라.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홍보매체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주류회사의 후원을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음.(안 제7조)
- 마. 구청장은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 바. 영등포구민은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위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음.(안 제9조)
- 사. 구청장은 매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소란과 무질서 등 각종 사건사고와 증가하는 사회적 손실 및 정신·신체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지역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절주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청정지역 지정, 절주실천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과 학교 정화구역,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관내 버스·택시 정류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된 장소의 입구에 설치하도록 하여 음주청정지역에서는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어 관리되도록 그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 영등포구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한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6조에 관내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 구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 등에 대하여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하거나 청소년 관련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후원하지 못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홍보물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음주문화에 노출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8부터 제10조까지에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주민이나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음주청정지역에서 절주 등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에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제반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소란과 무질서 등 각종 사건사고와 증가하는 사회적 손실 및 정신·신체적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국민건강증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가지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보호법」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0년 기준 20조 990억원으로 추산되며, 특히 2006년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청소년 음주의 장·단기적 폐해로 인해 발생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12조 511억원으로

GDP의 1.42% 수준에 이르는 등 지역주민과 청소년의 음주로 인한 피해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정책 마련이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 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도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6.7>

④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02.1.19>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9, 2007.12.14, 2008.2.29, 2010.1.18, 2011.6.7>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